



국세청

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<장기요양기관>

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의료비 자료를 2020년 1월 7일(화)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귀 기관과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**개별적으로** 발급하거나 수집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귀 기관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2019년 12월 일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2019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대상기관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2 제출자료 : 본인일부부담금 자료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자료

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'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'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

3 제출대상 기간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

4 자료제출 방법

- 홈택스 로그인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
 -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ID로 로그인해서 ① 또는 ② 방법에 따라 제출
① 홈택스 > 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2019년_전산매체제출요령(의료비-요양기관) 참조하여 전산파일을 생성하여 텍스트로 제출
② 홈택스 > 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엑셀서식(의료비)에 기재하여 제출
 - ※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홈택스 > 자료실(자료번호 468)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가능

5 제출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. 7.까지 제출 (부득이한 경우 1.13. 20시까지 제출)

- '20.1.13.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.15.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1.15. 이후 근로자나 세무서 담당자의 요청 등으로 자료를 수정·추가할 경우 '20.1.15. ~ '20.1.18.까지 제출하여야 하며(제출시간 18시~22시, 18일은 18시~20시) 근로자는 수정·추가제출분을 1.20.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6 유의사항

- 제출한 자료 중 오류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**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 - (예시)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
- 엑셀로는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> 자료실(자료번호468) > [연말정산간소화]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 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